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인

2015년 8월 7일

##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공익침해행위"란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2. "공익신고등"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
3. "공익신고자"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4. "공익신고자등"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설치·운영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등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

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등) ①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며, 감사담당관이 공익신고책임관(이하 "책임관"이라 한다)이 된다.

② 책임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)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③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·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,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.

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⑤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 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,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.

⑥ 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공익신고 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6조(대표자 선정 등)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
제7조(보완의 요구)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,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공익신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
2.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
3. 공익침해행위 내용
4.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
5.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

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

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.

제8조(공익신고의 조사) ① 책임관은 접수하거나 위원회 등이 이첩·송부한

공익신고의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,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책임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
② 책임관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는 공익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공익신고는 영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)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,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.

제10조(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) 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정례조례, 회의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상금 지급신청의 안내)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조사한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면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고 서

접수일자		접수번호		처리기간	30일
신고자	이름	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이메일		
	연락처		직업		
피신고자	이름		신고자와의 관계		
	주소				
	연락처		직업		
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					
공익신고 내용					
증거자료 등 첨부서류					

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신고자

(인 또는 서명)
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

## 접 수 증

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 
접수일자 20 년 월 일  
신고제목  
신고자

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(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## 접 수 증

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 
접수일자 20 년 월 일  
신고제목  
신고자

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.

20 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(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
##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

신고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연락처			
공익신고	제목			
	접수일자		접수번호	
신분공개 동의여부	<p>1.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과정                    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⇒ [    ] 동의    [    ] 부동의</p> <p>2. 조사기관의 조사과정                      앞으로 귀하의 공익신고사건에 대하여 강남구에서 조사·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⇒ [    ] 동의    [    ] 부동의</p> <p>3. 수사기관의 수사과정                      귀하의 신고사건이 수사기관에 고발되거나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⇒ [    ] 동의    [    ] 부동의</p> <p>※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치하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·형사 절차에서부터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을 준용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.</p>			

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신분공개 동의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신고자

(인 또는 서명)

**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**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]





##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### 1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,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,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(제1조)
- 나.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관련 인력·예산 등 반영 (제3조)
- 다.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(4조)
- 라. 공익신고의 접수 및 관리, 대표자 선정, 신고서의 보완요구, 공익신고의 조사 (제5조~제8조)
- 마.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(제9조, 제11조)
- 바.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(제10조)